

팽창식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

(제54조제4항 관련)

1. 시설

가. 작업장

- 1) 천장의 높이는 4.5미터 이상,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정비하려는 구명뗏목을 펼쳤을 때의 바닥면적보다 클 것
- 2) 구명뗏목을 들어 올려 고정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
- 3)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, 충분한 조명장치를 갖추는 것
- 4)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 조절장치를 갖추는 것
- 5)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

나. 수세장

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, 수세시설을 갖추는 것

다. 누설 시험장

- 1)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일 것
- 2) 바닥은 뗏목의 고무포를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깔 것
- 3)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, 충분한 조명장치를 갖추는 것
- 4)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 조절장치를 갖추는 것
- 5)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

라. 정비한 구명뗏목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(이중으로 겹쳐서 저장하는 것을 금한다)

마. 부품 진열장

- 1) 공구·비품류 등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정비하여 놓을 수 있도록 선반식으로 되어 있을 것
- 2)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일 것

바. 사무실

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일 것

사. 위험물저장소

관계 법령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는 것

2. 인원

가. 정비기술자

팽창식 구명설비의 제작회사 또는 정비사업장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팽창식 구명설비에 관한 정비기술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 2명 이상을 확보할 것

나. 작업원

정비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 2명 이상을 확보할

것

3. 기구 및 비품류

가. 점검·정비를 위한 충분한 기구·예비품류

- 1) 수리·수세·분해 등을 위한 충분한 기구와 예비품을 비치할 것
- 2) 구명설비를 팽창 또는 수축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공기펌프(고압호스 및 연결관을 포함하여 청소·건조하기 위한 도구가 있을 것)
- 3) 구명설비의 주입구를 통해 불어넣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가스 등

나. 검사를 위한 기구

- 1) 누설시험을 위한 기구

압력계(혈압계 수은주 300밀리미터 또는 수압계)·온도계·기압계(아네로이드형), 공기압축기 및 전동 송·배풍기

- 2) 가스용기검사를 위한 기구류

저울(측정가능무게 20킬로그램), 온수시험용 물탱크(용기 1개 이상의 수용이 가능한 것일 것) 및 용기내압 시험설비

- 3) 자동이탈장치 시험용구(팽창식 구명뗏목 또는 팽창식 구명부기의 경우로 한정한다)(하중 5킬로그램 및 하중 200킬로그램에서 시험할 수 있는 것일 것)

- 4) 그 밖의 습도계·10미터 줄자 등

4. 정비 기준

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팽창식구명설비의 정비 기준
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확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